

인천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11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1.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소7708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6,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2021.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8,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4. 15.경 ‘대출중개회사의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피고 명의의 D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9. 4. 10.경 ‘E은행의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환능력평가 점수의 상향을 위해 실적관리용으로 15,00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한도인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2019. 4. 17. 11:19경 이 사건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7. 11:33경 D조합 시흥대야지점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원고가 입금한 15,000,000원 중 2,000,000원을 지인인 G의 계좌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7경 나머지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시흥대야어린이도서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이 사건 계좌에 H 명의로 입금된 8,000,000원을 12:25경 현금으로 인출한 후 12:40경 다시 시흥대야어린이도서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등으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원고는 2019. 5. 8.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7. 19.경 D조합로부터 411,761원을 환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9. 6. 12.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0,000원 중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방조를 하였다.’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피고가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자신의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인출행위를 할 당시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 12,588,239원(= 15,000,000원 - 2,000,000원 - 411,76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방조행위와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① 피고는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금융사기와 달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스스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믿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입금된 돈의 송금명의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개인인 점, 인출 장소도 당초 성남시 I역 부근 D조합 지점에서 D조합 시흥대야 지점으로 급하게 변경된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D조합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납부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한 점,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리에서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한 점, 피고 스스로도 나중의 8,000,000원을 전달한 뒤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고 경찰서에 아는 직원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미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그 수법 등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성명불상자의 말을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③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직접 인출하는 일반적인 유형과 달리, 이 사건은 피고가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하고 검거도 어렵게 만들었다.

④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15,000,000원 중 2,000,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위 금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그 범행의 유형과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사정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 정도,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3,776,471원(= 12,588,239원 × 30%,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 판사 원용일, 판사 오기두